

| |
|----------------------|
| 발간등록번호 |
| 11-1721000-000494-10 |

수탁 / 2021-044

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

2022. 2.

주관연구개발기관 /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제 출 문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‘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’(연구개발기간 : 2021.1.1. ~ 2021.12.31.)
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2022. 2.

주관연구개발기관명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

연구책임자: 구명희

참여연구자: 황명구

참여연구자: 최대승

참여연구자: 이혜림

참여연구자: 박보경

참여연구자: 이민정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.

< 요약 문 >

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사업명 | |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| | | | 총괄연구개발 식별 번호 (해당 시 작성) | | | | | |
| 내역사업명 (해당 시 작성) | | 연구비 관리제도 운영·지원 | | | | 연구개발과제번호 | | | | | |
| 기술 분류 |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| SB1102 (정책결정/집행) | 50 % | SB1199 (공공정책) | 30 % | SB9999 (정치/행정) | 20% | | | | |
| | 부처기술분류 (해당 시 작성) | 1순위 소분류 코드명 | % | 2순위 소분류 코드명 | % | 3순위 소분류 코드명 | % | | | | |
| 총괄연구개발명 (해당 시 작성) | |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연구제도 지원사업 | | | | | | | | | |
| 연구개발과제명 | |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| | | | | | | | | |
| 전체 연구개발기간 | | 2021. 1. 1. ~ 2021. 12. 31. | | | | | | | | | |
| 총 연구개발비 | | 총 450,000천원 (정부지원연구개발비: 450,000천원) | | | | | | | | | |
| 연구개발단계 | | 기초[] 응용[] 개발[] 기타(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)[√] | | | 기술성숙도 (해당 시 기재) | | 착수시점 기준() 종료시점 목표() | | | | |
|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| 최종 목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 및 출연(연) 등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 ○ 간접비 제도개선 과제 발굴 | | | | | | | | | |
| | 전체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2~2023년 (2년)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 및 출연(연) 등 약 2222개 기관 대상 ○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제도개선 사항 발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및 대학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과정에서 도출된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| | | | | | | | | |
| 연구개발성과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2~2023년(2년)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(229개 기관) ○ 출연(연) 회계기준 미적용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수행을 위해 변환보고서 검증 표준 절차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등 | | | | | | | | | |
|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고시자료로 활용 ○ 간접비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에 반영 | | | | | | | | | |
|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| | 해당 사항 없음 | | | | | | | | | |
| 연구개발성과의 등 록·기탁 건수 | 논문 | 특허 | 보고서 원문 | 연구 시설 ·장비 | 기술 요약 정보 | 소프트 웨어 | 표준 | 생명자원 생물 정보 | 화학물 자원 | 신품종 | |
| | | | 1 | | | | | | | 정보 | 실물 |
|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건수 | 과학적 성과 | | | 사회적 성과 | | | | | | | |
| | 논문 게재 | 학술 회의 발표 | 보고서 원문 | 법령 변경 | 정책 활용 | 안전 상징 | 제도 개선 | 다른 연구 에활 용 | 국제 협력 | (정책) 홍보 | 포상 ·수상 |
| | | | 1 | | | | | | | | |
| 국문핵심어 (5개 이내) | 비영리기관 | | 간접비고시비율 | | | | | | | | |
| 영문핵심어 (5개 이내) | non-profit corporation | | Indirect-cost ratio | | | | | | | | |

요 약 문

◆ 과제명: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

I. 연구의 배경

- 정부출연(연)·특정(연)·전문생산기술(연)·기타 비영리(연) 및 대학에 대한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필요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필요

II. 연구내용

-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 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
 - 대학 및 정부출연(연)·특정(연)·전문생산기술(연)·기타 비영리(연)분야 간접비고시 비율 산출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한 세부 산출기준 설정
-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2~2023년(2년) 적용 간접비 비율고시비율 산출
 - 정부출연(연)·특정(연)·전문생산기술(연)·기타 비영리(연) 분야
 - 교수, 공인회계사, 출연(연) 및 특정(연) 소속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간접비계상 기준산출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실적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
 - 산출된 실적 간접비 비율(안)에 '20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의 기관별 가·감률을 조정하여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(안)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
 - 대학 분야
 - '20년 연구활동지원역량 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 원가계산을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

- 산출된 실적 간접비 비율(안)에 '20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의 대학별 가·감률을 조정하여 대학별 간접비고시 비율(안) 산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(안) 최종 확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고시

Ⅲ. 연구결과

□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

- 대학 및 정부출연(연)·특정(연)·전문생산기술(연)·기타 비영리(연)분야 간접비 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
 - 대학분야 및 정부출연(연)·특정(연)·전문생산기술(연)·기타 비영리(연)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산출기준 결정
 - 2021년도 간접비고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사항
 - (공통사항)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가·감률 기준 변경

| 구분 | 변경 전 | | | | | 변경 후 | | | | | | 변경 사유 | |
|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|-----|-------|--|
| | S | A | B | C | D-E | S | A | B | C | D | E | | F |
| 가감률 적용 | +2%p | +1%p | 0%p | -1%p | -2%p | +10% | +7.5% | +5% | +2.5% | 0% | -5% | -10% | 간접비실사비율에 대한 가·감률 적용의 불합리성 해소(%p⇒%로 변경) |

- (공통사항) 참여제한 기간 및 건수에 따른 감률 기준 변경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 변경 사유 |
|----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감률 적용 | 국가R&D사업 참여제한 기간 및 건수에 따른 감률 기준(최대 -5%p) | 폐지 | ○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에 반영 예정 |

- (대학분야) R&D 계수사업 변경 (6개 사업→4개 사업)

| 변경 전 | 변경 후 | 변경 사유 |
|---|--|---|
| ①BK21플러스사업(0.5) ②산학협력고도화지원(0.5) ③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(ACE)(0.5) | ①BK21플러스사업(0.5) ②산학협력고도화지원(0.5) ③대학혁신지원사업(0.5) | 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R&D 계수 사업 변경내용 반영 (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(p.209),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) |

| 변경 전 | 변경 후 | 변경 사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④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(0.5) | ※ 변경전 ③④⑤ 통합('19) | |
| ⑤ 지방대학육성사업(0.5) | | |
| ⑥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(0.25) | ④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(0.25) | |
| 총 6개 사업 | 총 4개 사업 | |

- (대학분야)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제출

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부칙 제2조 (2020.1.7. 고시)

제2조(간접비사업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제출) 제5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사업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는 2021년도 간접비 비율 산출 시 2020회계연도 지출내역부터 제출한다.

※ 2020회계연도 자료 제출 시에는 전기(2019회계연도) 작성 생략 가능

– 2022년도 간접비고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하는 사항

- (비영리 연구개발기관)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연평균 30억 원 이상 지원받은 기관은 2023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부터 의무기관에 포함
- (대학)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가 최하등급(F, 70점미만)인 대학은 2022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부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에서 제외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2~2023년(2년) 적용 간접비고시 비율 산출

– 정부출연(연) · 특정(연) · 비영리(연)·전문생산기술(연) 등 63개, 대학 159개 대상

□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

○ 정부출연(연) · 특정(연) · 전문생산기술(연) · 기타 비영리(연)분야

- 대학 교수, 공인회계사, 정부출연(연) 및 특정(연) 소속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위원을 대상기관 특성에 따라 4개 분과로 구성·운영
- 산출 대상기관별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및 기관별 관계자 대면 검토 후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실적 간접비 비율(안) 도출
- 실적 간접비 비율(안)에 '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
- 산출된 기관별 간접비 비율(안)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
- 정부출연(연) 분야 간접비 비율(안) 산출 현황(총괄)

| 구분 | 의무기관 | | | | | 임의기관 | 계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| 출연(연) | 출연(연) 부설 | 특정(연) | 특정(연) 부설 | 전문(연) | 기타 비영리(연) | |
| 산출기관 수 | 22 | 6 | 10 | 5 | 14 | 6 | 63 |

※ 임의기관은 신청을 받아 원가 산출

* 산출대상기관(70개) 중 7개기관(국가과학기술연구회,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, 기초과학연구원, 한국실크연구원, 한국정보기술연구원, 한국과학창의재단, 한국원자력의학원)은 산출신청서 미제출, 인력양성·기반구축 등 간접비고시 비율 예외적용 가능사업으로만 구성 또는 결산서·원가산출 관련 자료 및 보완자료 미흡 등으로 원가산출을 하지 않음

－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내역

-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

| 구분 | 기관명 | 간접비 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정부출연연구기관 (23개) | 국가과학기술연구회 | 5.00 |
|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15.13 |
| | 한국과학기술연구원 | 15.98 |
| |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| 27.74 |
| | 한국기계연구원 | 16.29 |
| |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| 12.33 |
| | 한국생명공학연구원 | 16.29 |
| | 한국생산기술연구원 | 15.48 |
| | 한국식품연구원 | 24.03 |
| |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| 19.86 |
| | 한국원자력연구원 | 23.32 |
| | 한국재료연구원 | 9.61 |
| | 한국전기연구원 | 11.78 |
| | 한국전자통신연구원 | 22.67 |
| | 한국지질자원연구원 | 24.61 |
| | 한국천문연구원 | 39.23 |
| | 한국철도기술연구원 | 14.30 |
| | 한국표준과학연구원 | 13.60 |
| | 한국한의학연구원 | 26.66 |
| | 한국항공우주연구원 | 5.53 |
| | 한국해양과학기술원 | 14.77 |
| |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| 39.83 |
| | 한국화학연구원 | 19.06 |
|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(7개) |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| 5.00 |
| | 국가보안기술연구소 | 19.73 |
| | 극지연구소 | 16.68 |
| | 녹색기술센터 | 19.53 |
| |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| 18.81 |
| | 세계김치연구소 | 17.87 |
| | 안전성평가연구소 | 18.53 |

•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

| 구분 | 기관명 | 간접비 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특정연구기관 (13개) | 광주과학기술원 | 26.32 |
| | 기초과학연구원 | 5.00 |
| | 대구경북과학기술원 | 25.60 |
| | 울산과학기술원 | 26.44 |
| |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| 9.70 |
| | 한국과학기술원 | 24.94 |
| | 한국과학창의재단 | 17.00 |
| | 한국산업기술시험원 | 12.62 |
| | 한국산업기술진흥원 | 26.40 |
| | 한국세라믹기술원 | 18.46 |
| |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| 30.35 |
| | 한국원자력의학원 | 20.94 |
| |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| 20.75 |
|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(5개) |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| 6.40 |
| | 국가수리과학연구소 | 15.39 |
| | 고등과학원 | 25.47 |
| | 나노종합기술원 | 19.54 |
| | 한국뇌연구원 | 23.11 |

•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| 구분 | 기관명 | 간접비 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전문생산기술연구소 (16개) | ECO융합섬유연구원 | 21.24 |
| | 건설기계부품연구원 | 18.33 |
| | 다이텍연구원 | 8.85 |
| | 중소조선연구원 | 21.95 |
| | 한국광기술원 | 19.12 |
| | 한국로봇융합연구원 | 24.96 |
| | 한국섬유개발연구원 | 20.83 |
| |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| 19.74 |
| | 한국섬유소재연구원 | 16.00 |
| | 한국신발피혁연구원 | 29.02 |
| | 한국실크연구원 | 5.00 |
| | 한국정보기술연구원 | 5.00 |
| | 한국자동차연구원 | 19.33 |
| | 한국전자기술연구원 | 26.08 |
| |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| 23.35 |
| | 한국패션산업연구원 | 10.88 |

• 기타 비영리연구기관

| 구분 | 기관명 | 간접비 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(6개) | 고등기술연구원 | 18.29 |
| | 삼성서울병원 | 20.62 |
| | 포항산업과학연구원 | 19.44 |
| | 한국선급 | 20.26 |
| | 한국원자력안전재단 | 26.46 |
| | 한국파스퇴르연구소 | 28.55 |

○ 대학 간접비 비율(안) 산출

- '20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에 참여한 163개 대학 중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 50점 미만 대학, 간접비 산출 신청서 미제출 대학 및 대학 통합으로 인한 대학(5개)을 제외한 158개 대학과 '20년에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를 받지 않는 대학(5개)에 대학이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대상으로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실적 간접비 비율(안) 산출
 - 간접비 비율(안) 원가 실사는 전문 회계법인에 용역을 실시하고 산출결과를 간접비 산출소위원회에서 검증
- 산출된 실적 간접비 비율(안)에 '20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의 가·감률을 반영하여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
- 대학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 현황(총괄)

| 산출대상기관수 | 원가산출기관수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|--|
| 163개 | 159개 | 163개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참여대학 중 5개 대학 미 산출+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'20년도 설립 |

* 한국복지대학교, 세한대학교, 한세대학교는 '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 50점 미만이므로 간접비 비율 산출대상에서 제외, 청주교육대학교는 간접비원가 산출 미신청,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상대학교는 통합 후 경상국립대학교로 개칭

-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내역

| 연번 | 기 관 명 | 간접비 비율(%p) | 연번 | 기 관 명 | 간접비 비율(%p)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1 | 가천대학교 | 30.45 | 2 | 가톨릭관동대학교 | 26.85 |
| 3 | 가톨릭대학교 | 27.41 | 4 | 강릉원주대학교 | 28.00 |
| 5 | 강원대학교 | 26.95 | 6 | 건국대학교 | 28.98 |
| 7 | 건양대학교 | 27.70 | 8 | 경기과학기술대학교 | 19.32 |
| 9 | 경기대학교 | 28.70 | 10 | 경남대학교 | 28.30 |
| 11 | 경북대학교 | 30.10 | 12 | 경상국립대학교 | 25.01 |
| 13 | 경성대학교 | 24.76 | 14 | 경운대학교 | 16.57 |
| 15 | 경인교육대학교 | 28.02 | 16 | 경주대학교 | 26.60 |
| 17 | 경희대학교 | 26.61 | 18 | 계명대학교 | 27.33 |
| 19 | 고려대학교 | 27.09 | 20 | 고신대학교 | 28.70 |

| 연번 | 기 관 명 | 간접비 비율(%p) | 연번 | 기 관 명 | 간접비 비율(%p)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21 | 공주대학교 | 28.70 | 22 | 광운대학교 | 30.45 |
| 23 | 광주교육대학교 | 19.15 | 24 | 광주대학교 | 31.50 |
| 25 | 광주여자대학교 | 12.32 | 26 | 국립암센터국제대학원대학교 | 15.30 |
| 27 | 국민대학교 | 30.45 | 28 |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| 14.58 |
| 29 | 군산대학교 | 21.69 | 30 | 극동대학교 | 26.10 |
| 31 | 금강대학교 | 27.90 | 32 | 금오공과대학교 | 29.40 |
| 33 | 나사렛대학교 | 14.17 | 34 | 남부대학교 | 27.55 |
| 35 | 남서울대학교 | 30.45 | 36 | 단국대학교 | 29.94 |
| 37 | 대구가톨릭대학교 | 31.17 | 38 | 대구대학교 | 30.45 |
| 39 | 대구한의대학교 | 30.10 | 40 | 대림대학교 | 9.73 |
| 41 | 대전대학교 | 27.15 | 42 | 대진대학교 | 32.55 |
| 43 | 덕성여자대학교 | 29.72 | 44 | 동국대학교 | 29.31 |
| 45 | 동덕여자대학교 | 29.72 | 46 | 동명대학교 | 27.36 |
| 47 | 동서대학교 | 30.45 | 48 | 동신대학교 | 26.60 |
| 49 | 동아대학교 | 30.10 | 50 | 동양대학교 | 26.49 |
| 51 | 동양미래대학교 | 9.35 | 52 | 동의대학교 | 29.40 |
| 53 | 명지대학교 | 28.50 | 54 | 목원대학교 | 30.75 |
| 55 | 목포대학교 | 20.47 | 56 | 목포해양대학교 | 19.70 |
| 57 | 배재대학교 | 31.50 | 58 | 백석대학교 | 31.50 |
| 59 | 백석문화대학교 | 6.68 | 60 | 부경대학교 | 28.10 |
| 61 | 부산가톨릭대학교 | 28.00 | 62 | 부산대학교 | 24.81 |
| 63 | 부산외국어대학교 | 30.45 | 64 | 부천대학교 | 17.26 |
| 65 | 삼육대학교 | 31.50 | 66 | 상명대학교 | 30.00 |
| 67 | 상지대학교 | 25.62 | 68 | 서강대학교 | 29.98 |
| 69 | 서경대학교 | 21.85 | 70 | 서울과학기술대학교 | 30.45 |
| 71 | 서울교육대학교 | 29.72 | 72 | 서울대학교 | 30.45 |
| 73 |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| 31.17 | 74 | 서울시립대학교 | 27.34 |
| 75 | 서울여자대학교 | 30.75 | 76 | 서원대학교 | 31.50 |
| 77 | 서일대학교 | 13.27 | 78 | 선문대학교 | 21.71 |

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

| 연번 | 기 관 명 | 간접비 비율(%p) | 연번 | 기 관 명 | 간접비 비율(%p)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79 | 성결대학교 | 14.57 | 80 | 성공회대학교 | 26.60 |
| 81 | 성균관대학교 | 30.08 | 82 | 성신여자대학교 | 29.40 |
| 83 | 세명대학교 | 20.12 | 84 | 세종대학교 | 28.26 |
| 85 | 수원대학교 | 28.51 | 86 | 숙명여자대학교 | 31.50 |
| 87 | 순천대학교 | 22.18 | 88 | 순천향대학교 | 26.91 |
| 89 | 송실대학교 | 30.45 | 90 | 신라대학교 | 30.45 |
| 91 | 아주대학교 | 29.40 | 92 | 안동대학교 | 27.43 |
| 93 | 안양대학교 | 21.19 | 94 | 연세대학교 | 28.49 |
| 95 | 영남대학교 | 27.77 | 96 | 영산대학교 | 21.38 |
| 97 | 용인대학교 | 26.10 | 98 | 우석대학교 | 29.72 |
| 99 | 우송대학교 | 30.45 | 100 | 울산과학기술대학교 | 21.95 |
| 101 | 울산대학교 | 27.65 | 102 | 원광대학교 | 30.45 |
| 103 | 위덕대학교 | 13.55 | 104 | 을지대학교 | 18.31 |
| 105 | 이화여자대학교 | 29.40 | 106 | 인덕대학교 | 21.43 |
| 107 | 인제대학교 | 28.47 | 108 | 인천대학교 | 31.50 |
| 109 | 인하공업전문대학 | 25.07 | 110 | 인하대학교 | 29.40 |
| 111 | 전남대학교 | 27.01 | 112 | 전북대학교 | 27.05 |
| 113 | 전주대학교 | 31.17 | 114 | 제주국제대학교 | 8.50 |
| 115 | 제주대학교 | 24.86 | 116 | 제주한라대학교 | 14.25 |
| 117 | 조선대학교 | 30.45 | 118 | 중부대학교 | 19.66 |
| 119 | 중앙대학교 | 25.10 | 120 | 중원대학교 | 28.50 |
| 121 | 차의과학대학교 | 28.41 | 122 | 창신대학교 | 22.52 |
| 123 | 창원대학교 | 24.55 | 124 | 청운대학교 | 30.00 |
| 125 | 청주대학교 | 26.19 | 126 | 충남대학교 | 21.82 |
| 127 | 충북대학교 | 25.20 | 128 | 평택대학교 | 19.99 |
| 129 | 포항공과대학교 | 29.29 | 130 | 한경대학교 | 25.20 |
| 131 | 한국교원대학교 | 24.78 | 132 | 한국교통대학교 | 29.22 |
| 133 | 한국기술교육대학교 | 30.45 | 134 | 한국농수산대학교 | 15.90 |
| 135 | 한국방송통신대학교 | 22.76 | 136 | 한국산업기술대학교 | 23.58 |

| 연번 | 기관명 | 간접비 비율(%p) | 연번 | 기관명 | 간접비 비율(%p)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37 | 한국성서대학교 | 5.00 | 138 |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| 17.00 |
| 139 | 한국외국어대학교 | 30.10 | 140 |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| 31.77 |
| 141 | 한국전통문화대학교 | 17.20 | 142 | 한국체육대학교 | 21.28 |
| 143 | 한국항공대학교 | 29.40 | 144 | 한국해양대학교 | 24.26 |
| 145 | 한남대학교 | 25.01 | 146 | 한동대학교 | 26.76 |
| 147 | 한라대학교 | 24.28 | 148 |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| 8.67 |
| 149 | 한림대학교 | 23.1 | 150 | 한밭대학교 | 31.50 |
| 151 | 한서대학교 | 29.00 | 152 | 한성대학교 | 29.00 |
| 153 | 한신대학교 | 23.48 | 154 | 한양대학교 | 28.75 |
| 155 | 한양여자대학교 | 27.55 | 156 | 협성대학교 | 24.25 |
| 157 | 호남대학교 | 24.50 | 158 | 호서대학교 | 27.63 |
| 159 | 홍익대학교 | 28.00 | | | |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(안) 최종 확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6에 고시('21. 12. 29)

□ 간접비 제도개선 사항 발굴

- 출연(연) 회계기준 미적용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수행
 - (현행) 과기분야 출연(연) 회계기준 미적용 정부출연기관*에게 간접비 회계기준 변환보고서**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검증이 미흡
 - * 특정연구기관, 부처 직할 연구기관, 전문생산연구소 등
 - ** 원가산출을 위한 회계정보를 과기분야 출연(연)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로 변환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회계보고서
 - (개선) 간접비원가 산출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산출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, 변환보고서 검증 표준 절차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
-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필요
 - (현행) '21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해 간접비 지출내역서*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,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 및 분석 등이 미흡
 - * 대학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신청서 별지제6호서식(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)과 별지제7호서식(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) 제출
 - (개선) 부실한 간접비 지출내역서 제출을 방지하고,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검증지침 및 관련 매뉴얼 마련 필요
- 대학의 간접비원가 배분방식 고도화 추진 (중장기과제)
 - (현행) 연구지원과 교육지원을 함께 수행하는 공통지원부문에서 발생한 간접비는 '연구수익비율'이라는 단일원가동인에 따라 배부
 - (개선) 활동기준원가계산(Activity-Based Costing: ABC) 등의 도입을 통한 공통지원부문 간접비의 합리적인 배분방안 마련 필요

목 차

| | |
|--|----|
| 제1장 서 론 | 1 |
| 제1절 연구의 필요성 | 3 |
|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| 3 |
|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| 4 |
| | |
| 제2장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결정 | 7 |
| 제1절 추진근거 | 9 |
| 제2절 추진경과 | 9 |
| 제3절 정부출연(연)·특정(연)·전문생산기술(연)·기타 비영리(연)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| 11 |
| 제4절 대학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| 12 |
| 제5절 가·감률 기준 | 14 |
| | |
| 제3장 정부출연(연)·특정(연)·전문생산기술(연)·기타 비영리(연)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| 15 |
| 제1절 산출 개요 | 17 |
| 1. 대상기관 | 17 |
| 2. 산출절차 | 18 |
| 3. 제출자료 | 19 |
| 4. 산출방법 | 20 |
| 5. 대면검토 | 21 |
| 6. 이의신청 심의 | 23 |
| 제2절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결과 | 24 |

| | |
|--|-----------|
| 제4장 대학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| 29 |
| 제1절 산출 개요 | 31 |
| 1. 대상기관 | 31 |
| 2. 산출절차 | 31 |
| 3. 제출자료 | 32 |
| 4. 산출방법 | 34 |
| 5. 대면검토 | 35 |
| 6. 이의신청 심의 | 37 |
| 제2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 | 38 |
| | |
| 제5장 간접비 제도 개선방안 | 43 |
| 제1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방안 | 45 |
| 1. 출연(연) 등 비영리기관 분야 | 45 |
| 2. 대학분야 | 45 |
| | |
| 제6장 결 론 | 47 |
| 제1절 대학 간접비제도 개선 로드맵(안) | 49 |
| 1. 추진배경 | 49 |
| 2. 대학 간접비제도 개선 중장기 로드맵(안) | 50 |
| 3. 기대효과 | 53 |
| 제2절 출연(연) 등 간접비제도 개선 로드맵(안) | 54 |
| 1. 추진배경 | 54 |
| 2. 출연연등 간접비 제도 개선 로드맵(안) | 54 |
| 3. 단기 개선방안 | 55 |

표 목 차

<표 2-1> 2021년도 대학간접비 원가산출 상한 기준 13

<표 2-2> '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 등급별 가·감률 적용 기준 14

<표 2-3>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자료 제출 적용 가·감률 기준 14

<표 3-1> 2021년도 정부출연(연) 등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17

<표 3-2>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실무검토 분과별 일정 22

<표 3-3> 정부출연(연) 등 비 영리기관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(총괄) 24

<표 3-4> 2021년도 정부출연(연) 등 비 영리기관 분야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 25

<표4-1> 대학간접비 실사 일정 35

<표4-2> 대학간접비 실사 일정 36

<표 4-3> 대학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(총괄) 38

<표 4-4> 2021년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 38

<표 6-1> 원가동인 발굴이 필요한 간접비항목 예시 51

<표 6-2> 비등록금회계의 주요 수익 52

그림 목 차

| | |
|--|----|
| [그림 1-1]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체계 | 5 |
| [그림 2-1] 정부출연(연) 등 비 영리기관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절차 | 12 |
| [그림 3-1] 정부출연(연) 등 비 영리기관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| 18 |
| [그림 4-1]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| 31 |

제 1 장

서 론



제1절 연구의 필요성

-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서 간접비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 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에서 간접비의 비중과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음
- 또한,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가 필요
- 이러한 간접비 비중의 증가추세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,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출연(연), 특정(연), 전문생산기술(연), 기타 비영리(연) 및 대학 등에 대한 기관별로 정적인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 필요
 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제112조 제1항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매 2년 마다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」제22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는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및 적용 대상기관 확정

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

-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정
 - 정부출연(연)·특정(연)·전문생산기술(연)·기타 비영리(연) 분야 및 대학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정
 - 간접비 비율 산출방식, 산출절차 등 세부 산출기준 개선(안) 도출
 - 비영리기관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
 - 2022~2023년도 적용할 정부출연(연), 특정(연), 전문생산기술(연), 기타 비영리(연) 및 대학의 2021년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
- ※단, 출연(연) 등 분야의 연구개발기관은 22년도만 적용

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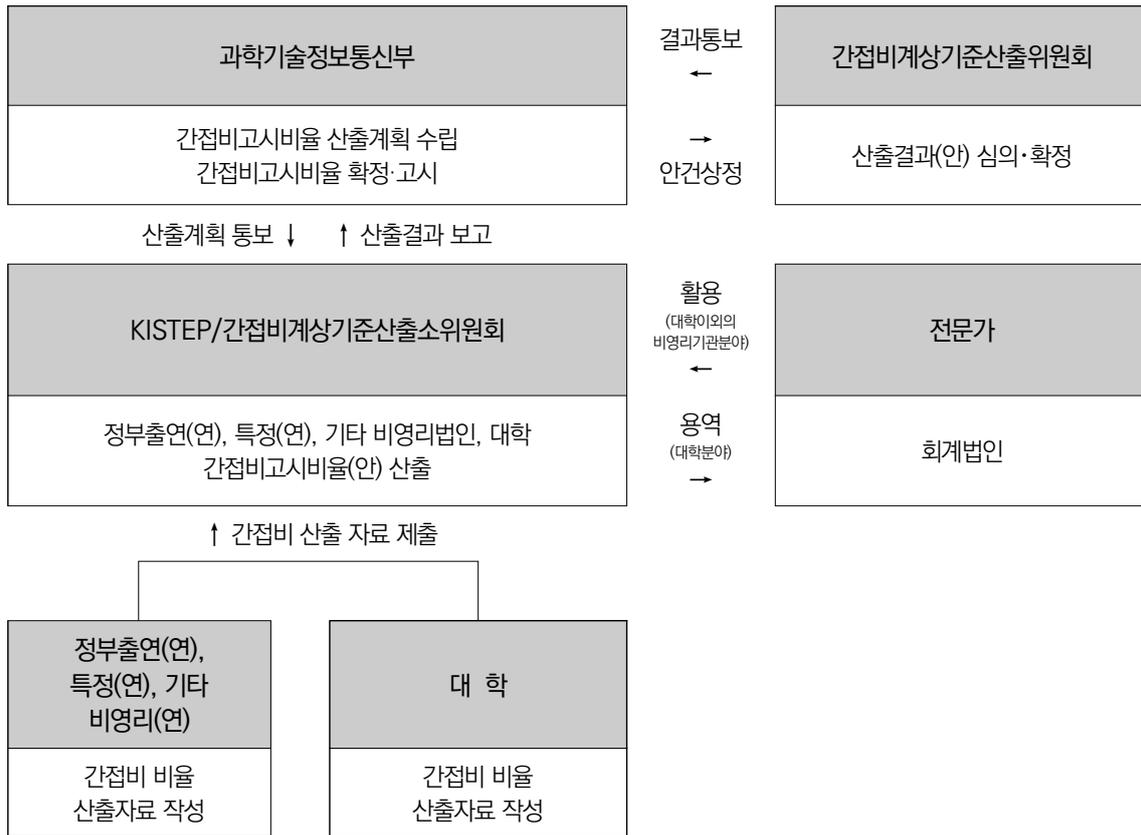
□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정

- 대학 교수, 공인회계사, 대학 및 정부출연(연)과 특정(연) 소속 회계 및 간접비 전문가로 간접비제도 개선 작업반을 구성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안 도출
 - － 대학분야는 대학분야 간접비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, 정부출연(연) 등 분야는 간접비 비율 산출방식을 검토하여 개선사항 도출 및 이를 반영한 산출기준(안) 설정
- 도출된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(안)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('20.12.30)

□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

- 정부출연(연) · 특정(연) · 전문생산기술(연) · 기타 비영리(연) 분야
 - － 대학 교수, 공인회계사, 정부출연(연) 및 특정(연)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간접비 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실적 간접비 비율(안) 산출
 - － 산출된 실적 간접비 비율(안)에 '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 평가결과 기관별 가·감률을 반영하여 '21년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(안)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
- 대학분야
 - － '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 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간접비 비율 산출을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실적 간접비 비율(안) 산출
 - － 산출된 실적 간접비 비율(안)에 '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 평가결과 대학별 가·감률을 반영하여 '21년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 간접비 비율(안) 최종 확정하고,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에 고시('21. 12. 29)

○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체계



[그림 1-1]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체계

제 2 장

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결정



제1절 추진근거

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제112조 제1항에 따라 2년마다 간접비고시비율을 정하여 확정

제112조(연구개발비의 지급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, 영 제 22조 제 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」제22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를 통해 간접비계상기준 산정 및 적용 대상기관 확정

제22조(간접비산출위원회)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
2. 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
3.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2절 추진경과

□ 추진경과

- '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(*20.12.30/제1차 간접비산출위)
 -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세부 산출기준 확정
- '21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(안) 설명회(*20.11.24., 온라인)
-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 실시(*21.05~'21.11)
 - 대상기관에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자료 접수(*20.11.24~'21.5.31)
 -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서류검토(6.7, 6.24/2회)

-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분과별 실사(7.7~13) 및 검증(8.5, 9.2/2회)
-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(안)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·심의(10.13~11.26)
-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('21.3~'21.11)
 -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자료 접수(2회/'21.03.31, '21.8.30)
 - ※ '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참여 대학(163개) 중 미 참여 대학(5개) 제외
 - 위탁 회계법인을 통해 대학 제출자료 실사(4.1~11.30)
 -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간접비 실사결과(안) 검증(10.6., 10.18)
 -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결과(안)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·심의(10.29~11.26)
- '20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가·감률 기준 반영(10.13~11.26)
- '21년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('21.12)
 - 당연직 위원(17명(위원장, 16개 부처),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(학계(4명), 연구계(4명), 기타(2명)) (임기 : 21.12.10~'23.12.09(2년))
 - ※ '21년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구성('21.06.01)
-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(안)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제출('21. 12. 14)
- '21년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심의('21.12.21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('21.12.29)

제3절 정부출연(연)·특정(연)·전문생산기술(연)·기타 비영리(연)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

- 정부출연(연) 등 비영리 연구기관의 간접비 비율 원가 산출식 = A + B

◇ 출연(연) 등 비영리 연구기관의 간접비실사비율(원가산출식) = A + B

■ A (실지출 간접비 비율) =
$$\frac{\text{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*}}{\text{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}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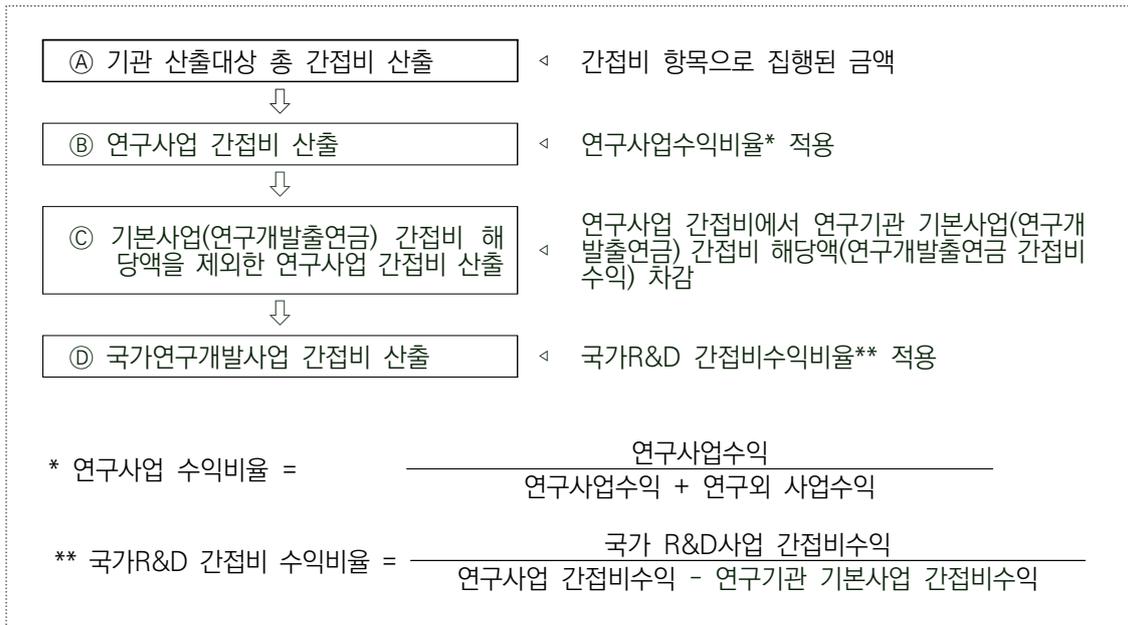
* 인력지원비, 연구지원비, 성과활용지원비

■ B (추가소요 간접비 비율) =
$$\frac{\text{③ 추가소요 간접비**}}{\text{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}}$$

** 연구용 신축건물에 따른 기관공통지원경비

- 산출 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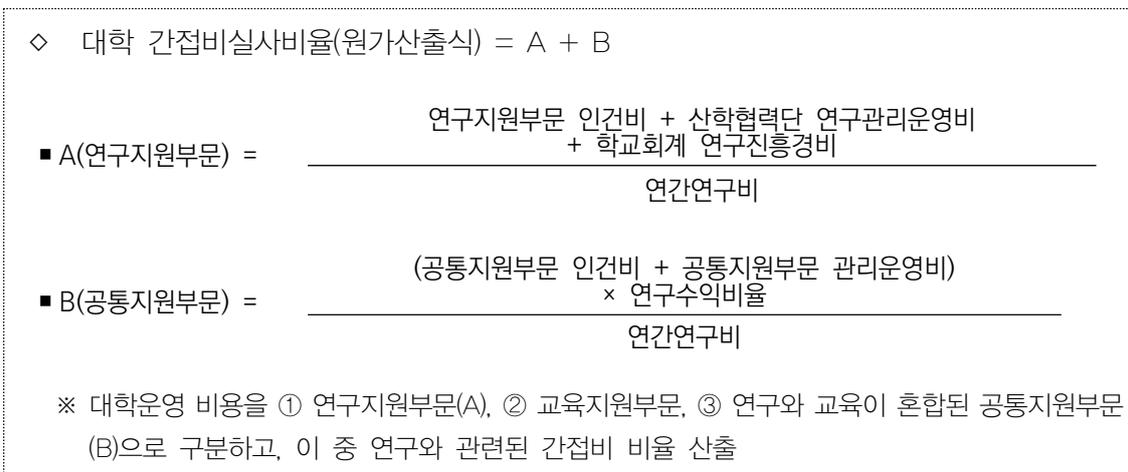
- 21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직전 2개 회계연도(2019, 2020) 간접비 실지출율(A)을 원가계산방식으로 계산하고, 이를 산술평균한 후, 추가소요 간접비(B)를 더하여 원가산출 간접비 비율을 산정
 -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: 기관의 총 간접비 집행액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간접비 비율을 절차에 따라 산출
 -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: 국가 R&D 연구과제 수행 시 발생한 인건비, 학생인건비, 연구장비·재료비 등 직접비
 - 추가소요 간접비 : 연구용 신축(증축) 건물에 한하여 완공에 따른 소요 운영경비의 50%를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인정



[그림 2-1] 정부출연(연) 등 비 영리기관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절차

제4절 대학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

□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 산출식 : A + B



□ 산출 원칙

- 2019~2020년도 간접비 실지출율을 원가산출식에 따라 실사(A+B) 후 상한기준을 적용하여 기본 간접비율을 산출

○ 연구지원부문(A)

- 연구를 지원하는 부서의 인건비 및 「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」운영계산서 중 간접비 사업비 항목의 연구관리운영비* 반영

* 연구지원비(기관공통지원경비,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, 연구실안전관리비, 연구보안 관리비, 연구윤리활동비, 연구활동지원금 등) 및 성과활용지원비(과학문화활동비,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)

- 학회회계*의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중 논문게재료, 학술활동지원비 및 연구실안전 관리비를 연구진흥경비로 반영

* 국립대학은 대학회계, 법인전환 국립대학은 법인회계, 사립대학은 교비회계

○ 공통지원부문(B)

- 연구와 교육을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서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산출하여 연구수익 비율* 적용

* 연구수익비율 = 연구수익 / (연구수익 + 교육수익)

- 연구수익비율의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은 결산서 기준으로 산출하되, R&D계수 적용 사업은 R&D계수에 따라 각각 반영

○ 간접비 실사비율에 따른 간접비 비율 실사(A+B)후 상한 적용

- 실사율에 따른 기관별 간접비 비율 상한기준 적용

〈표 2-1〉 2021년도 대학간접비 원가산출 상한 기준

| 실사율 | 40%p 이상 | 35%p 이상 | 30%p 이상 | 28%p 이상 | 28%p 미만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적용비율 | 31%p | 30%p | 29%p | 28%p | 실사율 |

○ 최종 간접비 비율 산출식 = A + B(원가산출) ± C(가·감률)

- 간접비 원가산출 후(대학은 상한기준 적용 이후) 가·감률 적용
- 대학의 경우,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미신청대학, 20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미참여 대학 및 점수가 50점 미만인 대학, 간접비 실사비율이 5% 미만이거나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이 5% 미만인 대학은 각각 5% 적용

제5절 가·감률 기준

- 정부출연(연)분야 및 대학의 기관별 간접비 원가 산출 후 가·감률 기준을 적용
 - 「'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 평가」결과 등급별 가·감률 적용

〈표 2-2〉 '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 등급별 가·감률 적용 기준

| 등급 | S | A | B | C | D | E | F |
|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|-------|
| 적용 비율 (상한기준 적용비율에 곱하여 반영하는 가·감률) | +10%p | +7.5%p | +5%p | +2.5%p | 0%p | -5%p | -10%p |

- 간접비 산출시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·통보될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적용(최대 -3%p)

〈표 2-3〉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자료 제출 적용 가·감률 기준

| 적발건수 | 적용기준 | 가중치 | 감률 |
|-------|------|-----|-------|
| 1건 | 3%p | 0.6 | 1.8%p |
| 2건 | 3%p | 0.7 | 2.1%p |
| 3건 | 3%p | 0.8 | 2.4%p |
| 4건 | 3%p | 0.9 | 2.7%p |
| 5건 이상 | 3%p | 1.0 | 3.0%p |

제 3 장

**정부출연(연)·특정(연)·전문생산기술(연)·
기타 비영리(연)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**



제1절 산출 개요

1. 대상기관
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기관
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연평균 30억원 이상* 지원받은 비영리연구기관** 중 신청기관

* 연구비 재지급 사업을 제외한 금액임

** 연구관리전문기관,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

〈표 3-1〉 2021년도 정부출연(연) 등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

| 구 분 | 기 관 명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부출연(연) (23개) | 국가과학기술연구회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기계연구원,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, 한국생명공학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식품연구원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원자력연구원, 한국재료연구원, 한국전기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한국지질자원연구원, 한국천문연구원, 한국철도기술연구원, 한국표준과학연구원, 한국한의학연구원,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한국해양과학기술원,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, 한국화학연구원 |
| 출연(연) 부설 (7개) |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, 국가보안기술연구소, 극지연구소, 녹색기술센터,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, 세계김치연구소, 안전성평가연구소 |
| 특정(연) (13개) | 광주과학기술원, 기초과학연구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울산과학기술원,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한국과학기술원, 한국과학창의재단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세라믹기술원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, 한국원자력의학원,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|
| 특정(연) 부설 (5개) | 고등과학원, 나노융합기술원,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, 한국뇌연구원, 국가수리과학연구소 |

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

| 구 분 | 기 관 명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전문생산 기술(연) (16개) | ECO융합섬유연구원, 건설기계부품연구원, 다이텍연구원, 중소조선연구원, 한국광기술원, 한국로봇융합연구원, 한국섬유개발연구원,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, 한국섬유소재연구원, 한국신발피혁연구원, 한국실크연구원, 한국정보기술연구원, 한국자동차연구원, 한국전자기술연구원,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, 한국패션산업연구원 |
| 기타 비영리(연) (6개) | 고등기술연구원, 삼성서울병원, 포항산업과학연구원, 한국선급, 한국원자력안전재단, 한국파스퇴르 연구소 |

※ 제외기관

-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신청서 미제출기관
 - 국가과학기술연구회,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, 기초과학연구원, 한국실크연구원, 한국정보기술연구원
- 수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 인력 양성·기반 구축 등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적용 가능사업으로 구성된 기관
 - 한국과학창의재단
- 결산서, 원가산출 관련 자료, 보완자료 미흡 등의 사유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산출불가한 것으로 판단한 기관
 - 한국원자력의학원

2. 산출절차

| 추진단계 | 추진주체 | 세부추진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(안) 마련 |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| ■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, 세부 산출기준 및 서식 확정 |
|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소위원회 구성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■ 산·학·연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 |
|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(KISTEP) | ■ 출연(연) 분야의 기관별 간접비 실사율 및 가·감률 산출 ■ 기관별 의견수렴 및 보완 |
|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(안) 확정 |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| ■ 기관별 간접비 실사율 및 가·감률 심의 |
|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■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확정 및 고시 |

[그림 3-1] 정부출연(연) 등 비 영리기관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

3. 제출자료

- 기본자료: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및 공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2개년도 결산자료 등 (결산보고서, 감사보고서 등)

| 번호 | 표준 템플릿 제목 | 세부내역 | 자료 형식 | 필수 /예시 구분 | 템플릿 제공 여부 |
|----|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0 | 2021년도 출연(연)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| | 엑셀 | 필수 | ○ |
| 1 |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| | 한글 /PDF | 필수 | ○ |
| 2 | 출연(연)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| | 엑셀 | 필수 | ○ |
| 3 | 출연(연)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날인본 | | PDF | 필수 | ○ |
| 4 | 출연(연) 등 연구운영성과표(또는 손익계산서) | | 엑셀 /PDF | 필수 | ○ |
| 5 | 출연(연) 등 결산서 및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| | PDF | 필수 | X |
| 6 | 인건비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차 검증자료 | | 엑셀 | 필수 | ○ |
| 7 | 인건비 세부내역 | | 엑셀 | 예시 | ○ |
| 8 | 연구인력과 자원인력 구분기준, 외부인력과 내부인력 구분기준 | | 엑셀 | 예시 | ○ |
| 9 |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검증자료 | | 엑셀 | 필수 | ○ |
| 10 | 연구지원비 세부내역 | 10-1. 기관공동지원경비 | 엑셀 | 필수 | ○ |
| | | 10-2.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| 엑셀 | 필수 | ○ |
| | | 10-3. 연구실안전관리비 | 엑셀 | 필수 | ○ |
| | | 10-4. 연구보안관리비 | 엑셀 | 필수 | ○ |
| | | 10-5. 연구유리활동비 | 엑셀 | 필수 | ○ |
| | | 10-6. 연구개발준비금비용 | 엑셀 | 필수 | ○ |
| | | 10-7. 과학문화활동비 | 엑셀 | 필수 | ○ |
| | | 10-8.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| 엑셀 | 필수 | ○ |
| 11 | 연구사업비목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차 검증자료 | | 엑셀 | 필수 | ○ |
| 12 |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검증 자료 | | 엑셀 | 필수 | ○ |
| 13 |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 | | 엑셀 | 필수 | ○ |
| 14 | 기술지원사업 상세내역 | * 기술지원사업 내용 및 현황 설명, 기술 지원사업을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 | 문서 | 예시 | X |
| 15 |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 | *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 제출 (간접비편성및관리지침이없는기관은지침을 운영하지않는사유를제출) | 문서 | 필수 | X |
| 16 | 회계기준 변환보고서 | *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을 미적용하는 기관만 작성 | 문서/ 엑셀 | 필수 | X |

- 별도자료
 -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 자료
 - 추가소요 및 특이 사항 증빙 등 근거자료

4. 산출방법

-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위원 등을 활용하여 검토위원 구성·운영
 -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공인회계법인 소속 위원, 정부출연(연) 및 특정(연) 소속 회계전문가로 검토위원을 구성하여 2인 1분과 총 4개 분과로 구성·운영
- 서면검토
 -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기관별 제출자료 검토 실시, 필요시 보완자료 요청
 - 출연(연) 등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실사비율 산출을 위한 전략회의('21. 06. 03)
 - 출연(연) 등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절차 및 방법 논의, 추진일정 논의 및 확정 등
 - 출연(연)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1차 서류검토 회의('21. 06. 07)
 - 출연(연) 등 비영리기관별 템플릿 제출여부 확인, 기관별 수정·보완 사유 및 요청자료 정리 등 (형식적 검토)
 - 출연(연)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2차 서류검토 회의('21. 06. 24)
 - 출연(연) 등 비영리기관별 내용적 요건 서류 검토, 기관별 수정·보완 사항 종합 정리 및 향후 계획 논의(내용적 검토)
- 대면검토
 - 분과별·일정별로 연구개발기관별 대면 방법(필요시 비 대면)에 의해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간접비 비율 산출 관련 자료를 확인, 필요시 보완자료 요청·검토
 -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실적 간접비 비율(안) 산출
 - 산출된 실적 간접비 비율(안)에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간접비 비율(안) 산출

□ 최종검토

-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간접비 비율(안) 검토 후 특이사항,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 상정·심의하여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(안) 확정
 - － 출연(연) 등 비영리기관분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1차 회의(*21. 08. 05)
 -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시 제기된 이슈 사항 논의 및 적용 기준 결정, 향후 추진계획 논의 및 결정 등
 - － 출연(연) 등 비영리기관분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2차 회의(*21. 09. 02)
 -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추진현황 중간점검 및 이슈사항에 대한 적용기준 결정, 향후 추진일정 논의 및 결정 등

5. 대면검토

- 일 시: 2021. 7. 5(월) ~ 13(금) (7일간)
- 장 소: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13층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
- 대상기관: 총 63개 기관
 - 정부출연(연):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22개 기관
 - 출연(연)부설: 극지연구소,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6개 기관
 - 특정(연): 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 등 10개 기관
 - 특정(연)부설: 고등과학원, 나노종합기술원 등 5개 기관
 - 전문(연): ECO융합섬유연구원, 다이텍연구원 등 16개 기관
 - 기타 비영리(연): 고등기술연구원, 삼성서울병원 등 6개 기관

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

□ 검증일정

〈표 3-2〉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실무검토 분과별 일정

| 날짜 | 시간 | 1분과 | 2분과 | 3분과 | 4분과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7.5 (월) | 09:30-11:30 | 사전 검토 | | | |
| | 11:30-13:00 | 점 심 | | | |
| | 13:00-15:00 |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서울) | 한국원자력의학원(서울) |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(대전) | 울산과학기술원(울산) |
| | 15:00-15:30 | 추가검토 및 휴식 | | | |
| | 15:30-17:30 | 한국산업기술시험원(진주) | 광주과학기술원(광주) | 대구경북과학기술원(대구) |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서울) |
| | 17:30-18:00 | 추가검토 및 마무리 | | | |
| 7.6 (화) | 09:30-11:30 | 한국과학창의재단(서울) |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오창) | 동남권원자력의학원(서울) | 국가수리과학연구소(대전) |
| | 11:30-13:00 | 점 심 | | | |
| | 13:00-15:00 | 한국과학기술원(대전) | 한국세라믹기술원(진주) | 나노융합기술원(대전) | 한국자동차연구원(천안) |
| | 15:00-15:30 | 추가검토 및 휴식 | | | |
| | 15:30-17:30 |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대전) | 한국광기술원(광주) | 한국로봇융합연구원(포항) | 건설기계부품연구원(군산) |
| | 17:30-18:00 | 추가검토 및 마무리 | | | |
| 7.7 (수) | 09:30-11:30 | 고등과학원(서울) | 한국패션산업연구원(대구) | 한국섬유소재연구원(경기) | 한국전자기술연구원(경기) |
| | 11:30-13:00 | 점 심 | | | |
| | 13:00-15:00 | 한국뇌연구원(대구) | 다이텍연구원(부산) | 한국신발피혁연구원(부산) | 한국선급(창원) |
| | 15:00-15:30 | 추가검토 및 휴식 | | | |
| | 15:30-17:30 | 한국산하양모소재연구원(부산) |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(경산) | ECO융합섬유연구원(익산) | 세계김치연구소(광주) |
| | 17:30-18:00 | 추가검토 및 마무리 | | | |
| 7.8 (목) | 09:30-11:30 | 한국원자력안전재단(성남) | 고등기술연구원(경기) | 한국파스퇴르연구소(경기) |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(대전) |
| | 11:30-13:00 | 점 심 | | | |
| | 13:00-15:00 | 중소조선연구원(부산) | 포항산업과학연구원(포항) | 삼성서울병원(서울) | 한국생산기술연구원(천안) |
| | 15:00-15:30 | 추가검토 및 휴식 | | | |
| | 15:30-17:30 | 한국섬유개발연구원(대구) | 인천생명기연구소(대전) | 녹색기술센터(서울) | 한국항공우주연구원(대전) |
| | 17:30-18:00 | 추가검토 및 마무리 | | | |
| 7.9 (금) | 09:30-11:30 | 한국원자력연구원(대전) | 국가보안기술연구소(대전) | 극지연구소(인천) | 한국천문연구원(대전) |
| | 11:30-13:00 | 점 심 | | | |
| | 13:00-15:00 | 한국재료연구원(창원) | 한국전기연구원(창원) | 한국철도기술연구원(경기) | 한국초고해상도연구원(대전) |
| | 15:00-15:30 | 추가검토 및 마무리 | | | |
| 7.12 (월) | 09:30-11:30 | 사전 검토 | | | |
| | 11:30-13:00 | 점 심 | | | |
| | 13:00-15:00 |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(대전) |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(대전) | 한국기계연구원(대전)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(경기) |
| | 15:00-15:30 | 추가검토 및 휴식 | | | |
| | 15:30-17:30 | 한국해양과학기술원(부산) |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대전) | 한국표준과학연구원(대전) | 한국지질자원연구원(대전) |
| | 17:30-18:00 | 추가검토 및 마무리 | | | |
| 7.13 (화) | 09:30-11:30 | 한국전자통신연구원(대전) | 한국화학연구원(대전) | 한국생명공학연구원(대전) | 기초과학연구원 |
| | 11:30-13:00 | 점 심 | | | |
| | 13:00-15:00 | 한국식품연구원(원주) | 한국한의학연구원(대전) | 한국과학기술연구원(서울) | |
| | 15:00-17:00 | 추가검토 | 추가검토 | 추가검토 | 추가검토 |
| | 17:00- | 종 료 | | | |

* 상기 일정은 코로나-19 상황에 따라 대면검증에서 온라인(비대면) 검증으로 전환하여 실시

□ 검증방법

- 분과별 위원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기관의 담당자간 산출신청서 및 제출자료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제출자료 타당성 미흡시 추가 보완 자료 제출 등

6. 이의신청 심의

- 일 시: 2021. 11. 26(금), 기관당 30분

- 장 소: 삼경교육센터 3층 회의실(서울역 14번 출구)

- 대상기관: 총 2개 기관

- 원자력의학원, 동남권원자력의학원

- 심의방법

- 이의신청 사유, 소명 내용 및 증명자료 제시 등 설명(기관당 10분)

- 이의신청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기관 담당자간 질의·응답 등 (20분)

- 심의결과 통보

-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이의신청 기관에 통보

제2절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결과

□ 총괄현황

〈표 3-3〉 정부출연(연) 등 비 영리기관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(총괄)

| 년도 | 구분 | 의무기관 | | | | | 임의기관 | 계 |
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
| | | 출연(연) | 출연(연) 부설 | 특정(연) | 특정(연) 부설 | 전문(연) | 기타 비영리 (연)* | |
| '19 | 산출기관 수 | 21 | 9 | 12 | 5 | 16 | 8 | 71 |
| '21 | 산출기관 수 | 22 | 6 | 10 | 5 | 14 | 6 | 63 |

* 임의기관은 신청을 받아 원가 산출

□ 간접비고시비율 특이기관

| 구분 | 기관명 | 특이사항 | 산출위원회 결정사항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출연(연) | 국가과학기술연구회 |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신청서 미제출 |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비 제출 기관은 5% 적용 |
| 출연(연) 부설 |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| | |
| 전문(연) | 한국실크연구원 | | |
| | 한국정보기술연구원 | | |
| 특정(연) | 기초과학연구원 | 수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 인력양성·기반 구축 등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적용 가능사업으로 구성 |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적용 가능사업으로만 구성되어 17% 적용 |
| | 한국과학창의재단 | | |
| | 한국원자력의학원 | | |

□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현황

○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

〈표 3-4〉 2021년도 정부출연(연) 등 비 영리기관 분야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

| 구분 | 기관명 | 간접비고시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정부출연연구기관 (23개) | 국가과학기술연구회 | 5.00 |
|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15.13 |
| | 한국과학기술연구원 | 15.98 |
| |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| 27.74 |
| | 한국기계연구원 | 16.29 |
| |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| 12.33 |
| | 한국생명공학연구원 | 16.29 |
| | 한국생산기술연구원 | 15.48 |
| | 한국식품연구원 | 24.03 |
| |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| 19.86 |
| | 한국원자력연구원 | 23.32 |
| | 한국재료연구원 | 9.61 |
| | 한국전기연구원 | 11.78 |
| | 한국전자통신연구원 | 22.67 |
| | 한국지질자원연구원 | 24.61 |
| | 한국천문연구원 | 39.23 |
| | 한국철도기술연구원 | 14.30 |
| | 한국표준과학연구원 | 13.60 |
| | 한국한의학연구원 | 26.66 |
| | 한국항공우주연구원 | 5.53 |
| | 한국해양과학기술원 | 14.77 |
| |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| 39.83 |
| | 한국화학연구원 | 19.06 |
|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(7개) |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| 5.00 |
| | 국가보안기술연구소 | 19.73 |
| | 극지연구소 | 16.68 |
| | 녹색기술센터 | 19.53 |
| |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| 18.81 |
| | 세계김치연구소 | 17.87 |
| | 안전성평가연구소 | 18.53 |

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

○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

| 구분 | 기관명 | 간접비고시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특정연구기관 (13개) | 광주과학기술원 | 26.32 |
| | 기초과학연구원 | 5.00 |
| | 대구경북과학기술원 | 25.60 |
| | 울산과학기술원 | 26.44 |
| |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| 9.70 |
| | 한국과학기술원 | 24.94 |
| | 한국과학창의재단 | 17.00 |
| | 한국산업기술시험원 | 12.62 |
| | 한국산업기술진흥원 | 26.40 |
| | 한국세라믹기술원 | 18.46 |
| |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| 30.35 |
| | 한국원자력의학원 | 20.94 |
| |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| 20.75 |
|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(5개) |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| 6.40 |
| | 국가수리과학연구소 | 15.39 |
| | 고등과학원 | 25.47 |
| | 나노종합기술원 | 19.54 |
| | 한국뇌연구원 | 23.11 |

제3장 정부출연(연)·특정(연)·전문생산기술(연)·기타 비영리(연)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

○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| 구분 | 기관명 | 간접비고시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전문생산기술연구소 (16개) | ECO융합섬유연구원 | 21.24 |
| | 건설기계부품연구원 | 18.33 |
| | 다이텍연구원 | 8.85 |
| | 중소조선연구원 | 21.95 |
| | 한국광기술원 | 19.12 |
| | 한국로봇융합연구원 | 24.96 |
| | 한국섬유개발연구원 | 20.83 |
| |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| 19.74 |
| | 한국섬유소재연구원 | 16.00 |
| | 한국신발피혁연구원 | 29.02 |
| | 한국실�크연구원 | 5.00 |
| | 한국정보기술연구원 | 5.00 |
| | 한국자동차연구원 | 19.33 |
| | 한국전자기술연구원 | 26.08 |
| |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| 23.35 |
| | 한국패션산업연구원 | 10.88 |

○ 기타 비영리연구기관

| 구분 | 기관명 | 간접비고시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(6개) | 고등기술연구원 | 18.29 |
| | 삼성서울병원 | 20.62 |
| | 포항산업과학연구원 | 19.44 |
| | 한국선급 | 20.26 |
| | 한국원자력안전재단 | 26.46 |
| | 한국파스퇴르연구소 | 28.55 |

제 4 장

대학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



제1절 산출 개요

1. 대상기관

- 2020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에 참여한 대학

*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(「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각 대학별 산학협력단 포함)

- 산출 대학 현황

- 2020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에 참여한 대학(163개) 중 5개 기관*을 제외하고, 신설대학(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)을 포함한 159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

* 한국복지대학교, 세한대학교, 한세대학교는 '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 50점 미만이므로 간접비 비율 산출대상에서 제외, 청주교육대학교는 미신청,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상대학교는 통합 후 경상국립대학교로 개칭

2. 산출절차

-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에 따라 KISTEP에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(안)을 산출하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비 비율 계상기준 고시

| 추진단계 | 추진주체 | 세부추진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간접비고시 비율 산출기준(안) 마련 |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| ■ 간접비고시 비율 산출 대상기관, 세부 산출기준 및 서식 확정 |
|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소위원회 구성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■ 산·학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 |
|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(안) 산출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(KISTEP) | ■ 대학 분야의 기관별 간접비 실사율 및 가·감률 산출 ■ 기관별 의견수렴 및 보완 |
|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(안) 확정 |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| ■ 기관별 간접비 실사율 및 가·감률 심의 |
|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■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확정 및 고시 |

[그림 4-1]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

3. 제출자료

- 기본자료: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및 공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2개년도 결산자료 등 (결산보고서, 감사보고서 등)

| 번호 | 표준 템플릿 제목 | 세부내역 | 자료 형식 | 필수 /예시 구분 | 템플릿 제공 여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0 | 2021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| | 엑셀 | 필수 | ○ |
| 1 |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| | 한글/PDF | 필수 | ○ |
| 2 |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(국립대학/사립대학) | | 엑셀 | 필수 | ○ |
| 3 |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 날인본 | | PDF | 필수 | ○ |
| 4 |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| 4-1.(국립)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| 엑셀/PDF | 필수 | ○ |
| | | 4-2.(사립)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| 엑셀/PDF | 필수 | ○ |
| 5 | 산학협력단 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 | 5-1. 산학협력단 재무상태표 | 엑셀/PDF | 필수 | ○ |
| | | 5-2.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| 엑셀/PDF | 필수 | ○ |
| 6 | 학교회계 외부감사보고서 | | PDF | 필수 | X |
| 7 | 산학협력단 외부감사보고서 | | PDF | 필수 | X |
| 8 | 정보공시 내용 | 8-1. 연구비 수혜실적 | 엑셀 | 필수 | ○ |
| | | 8-2. 부설연구소 현황 | 엑셀 | 필수 | ○ |
| | | 8-3. 장학금 수혜혜택 | 엑셀 | 필수 | ○ |
| | | 8-4.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 | 엑셀 | 필수 | ○ |
| | | 8-5. 교사(敎舍)시설 확보 현황 | 엑셀 | 필수 | ○ |
| 9 | 학교회계 인건비 내역 | 9-1. 학교회계 인건비 세부내역 | 엑셀 | 예시 | ○ |
| | | 9-2. 인건비와 결산서 대사검증 | 엑셀 | 예시 | ○ |
| | | 9-3. 대학 부서별 업무내역/업무분장표 | 엑셀 | 예시 | ○ |
| | | 9-4. 공시자료와 인원수 대사 | 엑셀 | 예시 | ○ |
| | | 9-5. 대학 조직도 | 자유형식 | 필수 | X |
| | | 9-6. 대학 전화번호부 | 자유형식 | 필수 | X |
| | | 9-7. 연구소별 연구내역(연구소 인력 반영시만) | 엑셀 | 필수 | ○ |
| 10 | 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 | 10-1. 산학협력단 인건비 세부내역 | 엑셀 | 예시 | ○ |
| | | 10-2. 인건비와 결산서 대사검증 | 엑셀 | 예시 | ○ |
| | | 10-3. 산학협력단 부서별 업무내역 | 엑셀 | 예시 | ○ |

제4장 대학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

| 번호 | 표준 템플릿 제목 | 세부내역 | 자료 형식 | 필수 /예시 구분 | 템플릿 제공 여부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10-4. 공시자료와 인원수 대사 | 엑셀 | 예시 | O |
| | | 10-5.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세부내역 | 엑셀 | 예시 | O |
| | | 10-6.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평가 및 집행문서 | 자유형식 | 예시 | X |
| | | 10-7. 연구소별 연구내역(연구소 인력 반영시만) | 엑셀 | 필수 | O |
| 11 |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내역 | 11-1. 기관공통지원경비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1-2.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1-3. 연구실안전관리비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1-4. 연구보안관리비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1-5. 연구유리활동비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1-6. 대학연구활동지원금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1-7.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1-8. 과학문화활동비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1-9.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1-10. 관리운영비 자산회계액 세부내역(원칙) 또는 11-11. 관리운영비 자산회계액 세부내역(간편법)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2 |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내역 | 12-1.연구진흥경비 세부내역 | 엑셀 |
| 13 |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| 13-1. 정부 제출자료 | 자유형식 | 필수 | X |
| | | 13-2. 근거자료 | 자유형식 | 필수 | X |
| 14 | 공통지원관리운영비 내역 | 14-1. 공통지원관리운영비 조정금액 내역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4-2. (국립)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4-3. (국립)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내역 안분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4-4. (국립) 코러스 자료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4-5. (사립) 공통지원 관리운영비 총괄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4-6. (사립)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| 엑셀 | 필수 | O |
| 15 | 공공요금 산출내역 | 15-1. 대학 교육용 건물 현황 자료 요약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5-2. 공공요금 배분양식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5-3. 공공요금 청구 및 집행내역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5-4. 분기별 청구공문 및 이체확인증 | 엑셀 | 필수 | X |
| 16 | 연간연구비 | 16-1. 연구장비 자산회계액 산정내역(원칙) 또는 16-2. 연구장비 자산회계액 산정내역(간편법) | 엑셀 | 필수 | O |

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

| 번호 | 표준 템플릿 제목 | 세부내역 | 자료 형식 | 필수 /예시 구분 | 템플릿 제공 여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17 | 교내장학금, 근로장학금 내역 | 17-1. 교내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산정내역 | 엑셀 | 필수 | O |
| 18 | 연구수익비율 내역 등 | 18-1. 대학회계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(*국립대학 양식을 사용하는 대학만 작성)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18-2. R&D계수 적용사업 수익 근거자료 | 자유형식 | 필수 | X |
| 19 | 간접비 관련 규정 | 19-1. 간접비 관리규정 | 자유형식 | 필수 | X |
| | | 19-2. 연구개발능력성숙도 산정기준 | 자유형식 | 필수 | X |
| 20 | 간접비 지출내역서 (* 2020회계연도부터 제출) | 20-1.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| 엑셀 | 필수 | O |
| | | 20-2.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| 엑셀 | 필수 | O |

□ 별도자료: 기관별 간접비 비율(안) 산출 자료

4. 산출방법

□ 회계법인을 선정·업무 위탁하여 간접비 산출

○ 실무검토 ①

- KISTEP 및 회계법인은 대학별 간접비 산출 관련 제출자료를 확인, 필요시 보완자료 요청·검토
- 소명기관에 한하여 대학별 서류 접수 및 검토
-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산출을 위한 전략회의('21. 5. 17)
 -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절차 및 방법 논의, 대학별 검증 일정 논의 및 확정 등
- 대학분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1차 회의('21. 8. 11)
 - 2019 회계연도 대학별 간접비실사비율 중간 점검, 간접비실사비율산출 시 제기된 이슈 사항 논의 및 적용기준 결정
- 대학분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2차 회의('21. 10. 06)
 - 2020 회계연도 대학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중간 점검,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시 제기된 이슈사항 논의 및 적용기준 결정 등

- 대학분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3차 회의('21. 10. 18)
 - 2020 회계연도 대학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중간 점검,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시 제기된 이슈사항 논의 및 적용기준 결정 등
- 실무검토 ②
 -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: 대학별 실적 간접비 비율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조정 후 가·감사항,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여 2021년 간접비고시비율(안) 마련

5. 대면검토

- 간접비 원가 확인(1차, 2019회계연도)
 - 일시 및 장소: 2021. 5. 17(월) ~ 2021. 6. 4(금)/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13층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
 - 1단계(5.17~5.21) :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각 대학에 질의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수령(템플릿 별도 첨부)
 - 화상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
 - 2단계(5.24~5.28) : 화상회의(ZOOM)를 통해서 각 대학에서 제출한 답변 및 산출양식 수정(안)을 검토
 - 3단계(5.31~6.4) : 필요 시 대면실사를 진행하고, 각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최종 검토
 - ※ 2·3단계 진행과정에서도 유선·이메일 질의/답변은 계속 진행 가능

〈표4-1〉 대학간접비 실사 일정

| 구분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
| 날짜 | 5/17 | 5/18 | 5/19 | 5/20 | 5/21 |
| 업무 | 유선·이메일 실사 | | (휴일) | 유선·이메일 실사 | |
| 날짜 | 5/24 | 5/25 | 5/26 | 5/27 | 5/28 |
| 업무 | 화상회의(ZOOM) 실사 | | | | |
| 날짜 | 5/31 | 6/1 | 6/2 | 6/3 | 6/4 |
| 업무 | 대면실사(필요시) | | | 최종 검토 | |

- 실무검토기관: 동남회계법인(용역의뢰)
- 대상기관: 총 158개 대학
- 실사방법: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연장으로 인해 대면실사는 최소화하고, 유선·이메일·화상회의(ZOOM) 위주로 실사 수행

□ 간접비 원가 확인(2차, 2020회계연도)

- 일시 및 장소 : 2021. 9. 6(월) ~ 2021. 9. 17(금)/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13층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
 - 1단계(9.6~9.17) : 유선 또는 이메일, 화상회의(ZOOM)를 통해서 각 대학에서 제출한 산출양식 검증
 - 화상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
- ※ 필요 시 대면실사를 진행하고, 각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용을 최종 검토

〈표4-2〉 대학간접비 실사 일정

| 구분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날짜 | 9/6 | 9/7 | 9/8 | 9/9 | 9/10 |
| 업무 | 유선·이메일·화상회의(ZOOM) 실사 | | | | |
| 날짜 | 9/13 | 9/14 | 9/15 | 9/16 | 9/17 |
| 업무 | 유선·이메일·화상회의(ZOOM) 실사, (필요시) 대면실사 | | | | |

- 실무검토기관: 동남회계법인(용역의뢰)
- 대상기관: 총 158개 대학
- 실사방법: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실사는 최소화하고, 유선·이메일·화상회의(ZOOM) 위주로 실사 수행

6. 이의신청 심의

- 일 시: 2021. 11. 26(금), 기관당 30분
- 장 소: 서울 연세세브란스 빌딩 지하1층
- 대상기관: 총 4개 기관
 - 부산대학교, 목포대학교, 국립암센터대학원대학교, 강원대학교
- 심의방법
 - 이의신청 사유, 소명 내용 및 증명자료 제시 등 설명(기관당 10분)
 - 이의신청심의위원과 이의신청기관 담당자간 질의·응답 등 (20분)
- 심의결과 통보
 -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이의신청 기관에 통보

제2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

□ 산출대학 현황

〈표 4-3〉 대학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(총괄)

| 산출대상 기관수 | 원가산출 기관수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-|--|
| 163개 | 159개 | 163개 연구활동지원역량 평가 참여대학 중 5개 대학 미산출 ※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'20년도 설립 |

□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

〈표 4-4〉 2021년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

(단위: %p)

| 연번 | 기 관 명 | 간접비 비율(%p) | 연번 | 기 관 명 | 간접비 비율(%p)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 | 가천대학교 | 30.45 | 2 | 가톨릭관동대학교 | 26.85 |
| 3 | 가톨릭대학교 | 27.41 | 4 | 강릉원주대학교 | 28.00 |
| 5 | 강원대학교 | 26.95 | 6 | 건국대학교 | 28.98 |
| 7 | 건양대학교 | 27.70 | 8 | 경기과학기술대학교 | 19.32 |
| 9 | 경기대학교 | 28.70 | 10 | 경남대학교 | 28.30 |
| 11 | 경북대학교 | 30.10 | 12 | 경상국립대학교 | 25.01 |
| 13 | 경성대학교 | 24.76 | 14 | 경운대학교 | 16.57 |
| 15 | 경인교육대학교 | 28.02 | 16 | 경주대학교 | 26.60 |
| 17 | 경희대학교 | 26.61 | 18 | 계명대학교 | 27.33 |
| 19 | 고려대학교 | 27.09 | 20 | 고신대학교 | 28.70 |
| 21 | 공주대학교 | 28.70 | 22 | 광운대학교 | 30.45 |
| 23 | 광주교육대학교 | 19.15 | 24 | 광주대학교 | 31.50 |
| 25 | 광주여자대학교 | 12.32 | 26 | 국립암센터국제대학원대학교 | 15.30 |
| 27 | 국민대학교 | 30.45 | 28 |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| 14.58 |
| 29 | 군산대학교 | 21.69 | 30 | 극동대학교 | 26.10 |
| 31 | 금강대학교 | 27.90 | 32 | 금오공과대학교 | 29.40 |
| 33 | 나사렛대학교 | 14.17 | 34 | 남부대학교 | 27.55 |

제4장 대학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

| 연번 | 기 관 명 | 간접비 비율(%p) | 연번 | 기 관 명 | 간접비 비율(%p)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35 | 남서울대학교 | 30.45 | 36 | 단국대학교 | 29.94 |
| 37 | 대구가톨릭대학교 | 31.17 | 38 | 대구대학교 | 30.45 |
| 39 | 대구의학대학교 | 30.10 | 40 | 대림대학교 | 9.73 |
| 41 | 대전대학교 | 27.15 | 42 | 대진대학교 | 32.55 |
| 43 | 덕성여자대학교 | 29.72 | 44 | 동국대학교 | 29.31 |
| 45 | 동덕여자대학교 | 29.72 | 46 | 동명대학교 | 27.36 |
| 47 | 동서대학교 | 30.45 | 48 | 동신대학교 | 26.60 |
| 49 | 동아대학교 | 30.10 | 50 | 동양대학교 | 26.49 |
| 51 | 동양미래대학교 | 9.35 | 52 | 동의대학교 | 29.40 |
| 53 | 명지대학교 | 28.50 | 54 | 목원대학교 | 30.75 |
| 55 | 목포대학교 | 20.47 | 56 | 목포해양대학교 | 19.70 |
| 57 | 배재대학교 | 31.50 | 58 | 백석대학교 | 31.50 |
| 59 | 백석문화대학교 | 6.68 | 60 | 부경대학교 | 28.10 |
| 61 | 부산가톨릭대학교 | 28.00 | 62 | 부산대학교 | 24.81 |
| 63 | 부산외국어대학교 | 30.45 | 64 | 부천대학교 | 17.26 |
| 65 | 삼육대학교 | 31.50 | 66 | 상명대학교 | 30.00 |
| 67 | 상지대학교 | 25.62 | 68 | 서강대학교 | 29.98 |
| 69 | 서경대학교 | 21.85 | 70 | 서울과학기술대학교 | 30.45 |
| 71 | 서울교육대학교 | 29.72 | 72 | 서울대학교 | 30.45 |
| 73 |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| 31.17 | 74 | 서울시립대학교 | 27.34 |
| 75 | 서울여자대학교 | 30.75 | 76 | 서원대학교 | 31.50 |
| 77 | 서일대학교 | 13.27 | 78 | 선문대학교 | 21.71 |
| 79 | 성결대학교 | 14.57 | 80 | 성공회대학교 | 26.60 |
| 81 | 성균관대학교 | 30.08 | 82 | 성신여자대학교 | 29.40 |
| 83 | 세명대학교 | 20.12 | 84 | 세종대학교 | 28.26 |
| 85 | 수원대학교 | 28.51 | 86 | 숙명여자대학교 | 31.50 |
| 87 | 순천대학교 | 22.18 | 88 | 순천향대학교 | 26.91 |
| 89 | 송실대학교 | 30.45 | 90 | 신라대학교 | 30.45 |
| 91 | 아주대학교 | 29.40 | 92 | 안동대학교 | 27.43 |

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

| 연번 | 기관명 | 간접비 비율(%p) | 연번 | 기관명 | 간접비 비율(%p)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93 | 안양대학교 | 21.19 | 94 | 연세대학교 | 28.49 |
| 95 | 영남대학교 | 27.77 | 96 | 영산대학교 | 21.38 |
| 97 | 용인대학교 | 26.10 | 98 | 우석대학교 | 29.72 |
| 99 | 우송대학교 | 30.45 | 100 | 울산과학기술대학교 | 21.95 |
| 101 | 울산대학교 | 27.65 | 102 | 원광대학교 | 30.45 |
| 103 | 위덕대학교 | 13.55 | 104 | 을지대학교 | 18.31 |
| 105 | 이화여자대학교 | 29.40 | 106 | 인덕대학교 | 21.43 |
| 107 | 인제대학교 | 28.47 | 108 | 인천대학교 | 31.50 |
| 109 | 인하공업전문대학 | 25.07 | 110 | 인하대학교 | 29.40 |
| 111 | 전남대학교 | 27.01 | 112 | 전북대학교 | 27.05 |
| 113 | 전주대학교 | 31.17 | 114 | 제주국제대학교 | 8.50 |
| 115 | 제주대학교 | 24.86 | 116 | 제주한라대학교 | 14.25 |
| 117 | 조선대학교 | 30.45 | 118 | 중부대학교 | 19.66 |
| 119 | 중앙대학교 | 25.10 | 120 | 중원대학교 | 28.50 |
| 121 | 차의과학대학교 | 28.41 | 122 | 창신대학교 | 22.52 |
| 123 | 창원대학교 | 24.55 | 124 | 청운대학교 | 30.00 |
| 125 | 청주대학교 | 26.19 | 126 | 충남대학교 | 21.82 |
| 127 | 충북대학교 | 25.20 | 128 | 평택대학교 | 19.99 |
| 129 | 포항공과대학교 | 29.29 | 130 | 한경대학교 | 25.20 |
| 131 | 한국교원대학교 | 24.78 | 132 | 한국교통대학교 | 29.22 |
| 133 | 한국기술교육대학교 | 30.45 | 134 | 한국농수산대학교 | 15.90 |
| 135 | 한국방송통신대학교 | 22.76 | 136 | 한국산업기술대학교 | 23.58 |
| 137 | 한국성서대학교 | 5.00 | 138 |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| 17.00 |
| 139 | 한국외국어대학교 | 30.10 | 140 |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| 31.77 |
| 141 | 한국전통문화대학교 | 17.20 | 142 | 한국체육대학교 | 21.28 |
| 143 | 한국항공대학교 | 29.40 | 144 | 한국해양대학교 | 24.26 |
| 145 | 한남대학교 | 25.01 | 146 | 한동대학교 | 26.76 |
| 147 | 한라대학교 | 24.28 | 148 |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| 8.67 |
| 149 | 한림대학교 | 23.1 | 150 | 한밭대학교 | 31.50 |

제4장 대학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

| 연번 | 기관명 | 간접비 비율(%p) | 연번 | 기관명 | 간접비 비율(%p)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151 | 한서대학교 | 29.00 | 152 | 한성대학교 | 29.00 |
| 153 | 한신대학교 | 23.48 | 154 | 한양대학교 | 28.75 |
| 155 | 한양여자대학교 | 27.55 | 156 | 협성대학교 | 24.25 |
| 157 | 호남대학교 | 24.50 | 158 | 호서대학교 | 27.63 |
| 159 | 홍익대학교 | 28.00 | | | |

※ '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미 실시 대학 및 원가계산 대학 중 최종비율 5% 미만 대학은 5% 적용

제 5 장

간접비 제도 개선방안



제1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방안

1. 출연(연) 등 비영리기관 분야

① 출연(연) 회계기준 미적용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수행

- (현행) 과기분야 출연(연) 회계기준 미적용 정부출연기관*에게 간접비 회계기준 변환보고서**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검증이 미흡

* 특정연구기관, 부처 직할 연구기관, 전문생산연구소 등

** 원가산출을 위한 회계정보를 과기분야 출연(연)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로 변환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회계보고서

- (개선) 간접비원가 산출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산출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, 변환보고서 검증 표준 절차 및 가이드라인 마련

2. 대학분야

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필요

- (현행) '21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해 간접비 지출내역서*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,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 및 분석 등이 미흡

* 대학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신청시 별지제16호서식(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)과 별지제17호서식(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) 제출

- (개선) 부실한 간접비 지출내역서 제출을 방지하고,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검증지침 및 관련 매뉴얼 마련

② 대학의 간접비원가 배분방식 고도화 추진 (중장기과제)

- (현행) 연구지원과 교육지원을 함께 수행하는 공통지원부문에서 발생한 간접비는 '연구수익비율'이라는 단일원가동인에 따라 배부

- (개선) 활동기준원가계산(Activity-Based Costing: ABC) 등의 도입을 통한 공통지원부문 간접비의 합리적인 배분방안 마련

제 6 장

결 론



제1절 대학 간접비제도 개선 로드맵(안)

1. 추진배경

□ 대학 간접비원가 산출의 왜곡 현상 해소 필요

① 현행 대학의 간접비원가 계산은 출연(연)과 같이 재원별로 원가를 명확히 분리하여 산출하지 못하고, 공통지원 간접비를 연구수익비율이라는 하나의 원가동인에 따라 단순하게 배부하여 산정

– 이로 인해 연구지원부문에서 발생한 간접비보다 공통지원부문에서 발생한 간접비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

※ 간접비원가 중 공통지원부문의 비중은 그 동안 간접비 산출기준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최근 감소세는 정체상태임

⇒ (시사점) 원가왜곡 해소를 위해 간접원가를 대학의 활동에 따라 정밀하게 배부하는 활동기준원가계산(Activity-Based Costing: ABC) 제도 도입 필요

② 사립대의 경우 연구지원 투자는 교비회계 전체(등록금+비등록금)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, 공통지원 간접원가는 일부 회계 재원만 인정함에 따라 실제 소요 재원과의 괴리 발생

⇒ (시사점) 소요 재원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공통지원 간접원가의 인정범위 개선 필요

□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원가자료의 이용 가능

○ 국가R&D 간접비의 구분관리 의무화로 인해 국가R&D 간접비 지출내역과 학교회계전 출금 지출내역 자료*가 산출

* 국가R&D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6호와 제17호

⇒ (시사점) 산학협력단에서 지출되는 간접비도 국가R&D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됨에 따라, 이를 간접비 원가 산출에 활용 가능

2. 대학 간접비제도 개선 중장기 로드맵(안)

- 장기적으로는 대학 간접비원가 산출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ABC 제도 도입을 목표를 설정하되,
- ABC 제도 도입 이전까지는 간접비원가의 왜곡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와 중기에 가능한 개선사항을 적용

| 단기(2023년 산출) | 중기(2025년 산출) | 장기(2027년 이후) |
|---|--|--|
| 현행 산출기준 개선 | 원가동인 적용 등 | ABC 제도 도입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3년 간접비원가 산출 시 유의사항배포 • R&D계수사업 조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요 간접비 항목에 대하여 원가동인 적용(ABC 개념 도입) • 산학협력단 비용의 자원별 구분 적용 • 공통자원 관리운영비 인정 범위 확대 (사립대) • 연구수익비율 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중심대학에 대해 ABC 제도를 도입 • ABC 개념을 도입한 기존 산출 방식도 선택 가능 |

- (단기) 2023년 원가 산출 시에는 현행 간접비원가 산출방식을 유지하되, 시급히 필요한 개선사항 적용
- 2021년 원가 산출 시 불인정되었던 사항 등을 정리한「2023년 간접비원가 산출시 유의사항」을 각 대학에 사전 배포하여 대학에 편의 제공
 - 사립대학 조교인건비, 과거 미적립 퇴직금,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적용사례 및 유의사항 제시
- R&D계수 적용사업은 현행 R&D계수 적용기준을 삭제하고, 교육사업으로 분류
 - 현재 R&D계수 적용사업은 기획재정부 예산분류 R&D계수를 활용하여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으로 구분하였으나, 거의 대부분 인력양성 성격의 사업(HRD사업)이므로 R&D계수를 0%로 조정
 - ※ 산학협력단에 따라 R&D계수 적용사업을 연구수익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학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교육사업으로 일괄 분류

- (중기) 2025년 원가 산출 시에는 기존 산출방식의 전반적인 틀을 유지하되, 주요 간접비 항목에 대해 원가동인 적용, 산학협력단 지출액의 자원별 구분 적용 등 개선방안 추진
- 현행 공공요금과 같이 중요한 간접비 항목에는 ABC 개념을 도입하여 적절한 원가동인을 발굴·적용함
 - 중앙도서관 및 중앙전산원 인건비, 건축물관리비, 장비관리비, 시설용역비 등에 적용 가능

〈표 6-1〉 원가동인 발굴이 필요한 간접비항목 예시

| 구분 | 항목 | 원가동인 적용사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• 인건비 | • 중앙도서관 인건비 | • 도서관리 인력 등에 대한 원가 구분 필요 |
| | • 중앙전산원 인건비 | • 분야별 전산수요를 감안하여 원가 구분 필요 |
| | • 단과대학 행정실 인건비 | • 연구지원 행정업무 수요를 감안하여 원가 구분 필요 |
| • 관리운영비 | • 건축물관리비 | • 연구시설, 교육시설, 공통시설 등 사용 용도를 감안하여 원가 구분 필요 |
| | • 장비관리비 | • 연구장비, 교육장비, 공통장비 등 사용 용도를 감안하여 원가 구분 필요 |
| | • 시설용역비 | • 수행된 용역에 대한 성격을 고려하여 원가 구분 필요 |

- 산학협력단 간접비에 대해서는 국가R&D사업에서 발생한 간접비지출액을 구분 적용
 - 현재는 소요 재원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간접비를 재원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하고 있음
 - 그러나 향후 국가R&D 간접비 지출내역과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 자료가 산출됨에 따라 자원별 적용이 가능함
 - 국가R&D 간접비비율은 국가R&D재원을 기본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산학협력단 비용에 대해서 자원별로 구분 적용 필요
- ※ 2021년 제출된 지출내역서를 분석하여 지출내역서 계정과목의 세분화 등 개선작업 수행 예정

- 사립대는 학교회계 관리운영비의 인정범위를 교비회계 전체(등록금회계+비등록금회계)로 확대
 - 현재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, 연구지원 투자가 교비회계 전체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인정범위를 확대
 - ※ 국립대학도 사립대학과 동등한 수준으로 간접비원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출기준 개선 검토
- 이와 함께 연구수익비율 산정시 지금까지 미반영하던 비등록금회계 수익을 추가 반영
 - 수강료수입, 전입및기부수입, 교육부대수입, 교육외수입 등 운영수익에 반영되고 있는 항목에서 선별하여 연구수익비율에 반영

〈표 6-2〉 비등록금회계의 주요 수익

| 계정과목 | 해설 |
|-----------|--|
| • 수강료수입 | •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,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대학의 정규외 과정을 학생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수령하는 교육비 - 단기수강료 |
| • 전입및기부수입 | • 타 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금액 또는 기부·보조 받은 금액을 기록 - 전입금수입, 기부금수입, 국고보조금수입,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 |
| • 교육부대수입 | • 등록금이나 단기수강료처럼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는 아니나 교육활동과정에서 필수불가하게 발생하는 수입항목 - 입시수수료수입, 증명·사용료수입, 기타교육부대수입 |
| • 교육외수입 | • 교육외에서 발생하는 수입 - 예금이자수입, 기타교육외수입, 수익재산수입 |

- (장기) 활동기준원가계산(ABC) 제도가 도입되면 개별 대학은 ABC 제도와 기존 산출방식 중에서 간접비 산출방식을 선택하여 적용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, 대학의 실소요 간접비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을 위하여 연구중심 대학에 대하여 ABC 제도 도입을 적용 권유하고, 간접비율 가산 등 인센티브 적용
 - 다만, ABC 제도는 상당한 수준의 회계 정보의 산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, 연구활동의 비중이 높고, 관리 및 회계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학에서 도입 가능하므로,
 - 이러한 회계 인프라를 구비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 산출방식도 인정 필요
 - 2027년 원가 산출시 ABC 제도 도입을 위하여는 최소한 2024년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회계적 수준과 실정에 맞는 ABC 간접비원가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
 - 2027년에는 2025~2026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원가를 산출하므로 가급적 회계연도 시작 이전에 도입방안 마련

3. 기대효과

- 현행 간접비 산출방식을 순차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ABC제도 도입 이전에도 간접비 원가 왜곡 현상 일부 해소 가능
- ABC제도 도입 이후에도 대학이 개선된 산출방식과 ABC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대학의 자율권 보장

제2절 출연(연) 등 간접비제도 개선 로드맵(안)

1. 추진배경

- 의무기관으로 편입된 공공기관에 대한 산출 대비 필요
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연평균 30억 원 이상 지원받은 기관은 2023년부터 의무기관에 추가됨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의 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 제외되었던 공공기관에 대해 간접비를 산출함
 -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현황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2023년 산출시 애로사항이 발생 예상
 - ↳ (시사점) 간접비 산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기관 기준을 강화하고, 공공기관의 간접비 산출에 대한 준비상황 검토 필요
- 의무기관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
 - 현재 기관 유형에 따라 의무기관으로 포함된 기관 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비 규모가 작고, 간접비 산출의 실익이 없는 기관에 대한 범위 조정이 필요함
 - 전문(연) 중 국가R&D 사업비 규모가 20~30억원 수준인 기관의 경우 간접비원가 산출을 위한 비용 투입 대비 효익이 미흡
 - ※ '20년 국가R&D 연구비 예시 : ECO융합섬유연구원 23.5억원, 한국섬유소재연구원 31.5억원, 한국패션산업연구원 32.9억원 등
 - 의무기관에 대해서도 임의기관(연평균 30억원)처럼 국가R&D사업비 규모에 대한 제한기준 논의 필요

2. 출연연등 간접비 제도 개선 로드맵(안)

- 공공기관 간접비 산출계획 마련
 - 간접비원가 산출대상 공공기관 현황 파악

- 2022년 중 전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가R&D사업비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
 - ※ 연구실적 제출 요구시 국가R&D 판단기준 등 제시 필요
- RCMS 자료 등의 상호대사하여 산출대상 공공기관 확정
- 산출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주요 유의사항 전달
 - 특히 간접비 회계기준 적용 및 간접비 산출기준(산출양식 및 템플릿 포함)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여 2023년 산출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필요
- 의무기관 기준 강화
 - 의무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비 규모가 작고, 간접비 산출의 실익이 없는 기관에 대한 범위 조정
 - 의무기관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국가R&D 사업비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기관은 의무기관에서 제외

3. 단기 개선방안

- 2023년 간접비원가 산출 시에는 현행 간접비원가 산출방식을 유지
 - 다만, 2021년 산출시 불인정되었던 사항 등을 정리한「간접비원가 산출시 유의사항」(별첨자료 참조)을 출연(연) 등에 배포하여 기관에 편의 제공

주 의

1.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탁을 받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성과평가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운영에 관한 최종보고서입니다.
2.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.
3.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